

#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위한 48개 선거법 · 국회법 · 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 차례

---

및 결론	3
1.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직전의 정치개혁 법안들	5
2.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직전의 정치개혁 법안의 주제별 현황	7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	7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	9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들	10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	10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	11
6)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	11
3.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주요 과제들	12

## 요약 및 결론

---

- 19 국회의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2016년 3월 현재,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국회와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와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이 모두 폐기될 운명임.
  - 이 법안들은 현실적으로 남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정당이라면 20대 국회에서 실천할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공약하고,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처리할 우선 개혁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들임.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은 모두 48개(공직선거법 개정안 34개, 정당법 개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10개)이며,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을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됨.
  -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 위 여섯 가지 종류별로 제출된 법안을 주요 세부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 △투표 마감시각을 늘이는 법안이 10개,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이 6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이 3개, △선거출마에 따른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유권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후보자의 범죄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각각 1개씩 제출되어 있음.
  -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이는 법안이 4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7개 제출되어 있음.
  -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해,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 거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바꾸자는 법안이 1개, △투표용지와 벽보게재순서를 거대 정당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2개, △현역 의원과 경쟁할 예비 후보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1개 제출되어 있음.
  -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풀뿌리 지역정당도

법안이 3개,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1개 제출되어 있음.

-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청원을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심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3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청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안이 1개, △청원접수를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하고 인터넷 접수도 허용하자는 법안이 1개 제출되어 있음.
-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징계안을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5개,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음.
- 이들 법안들은 평소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임.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들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19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한 후, 20대 국회가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 < 및 국회 개혁 법안> 현황

### 1.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직전의 정치개혁 법안

- 2016 5월에 임기만료로 폐회할 예정인 19대 국회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16년 3월 15일 현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4개, 정당법 개정안이 4개, 국회법 개정안 10개 발의되어 있음. 이들 법안은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계류 중임.
-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34개임.

< 1>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정치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6.3.18. 기준)

	발의자	제출일	주제
1	박영선 의원	2012-06-22	유권자 표현 보장
2	주승용 의원	2013-03-19	투표시간 확대
3	이목희 의원	2012-07-26	투표시간 확대
4	박성호 의원	2012-09-03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5	진선미 의원	2012-09-04	투표시간 확대
6	장병완 의원	2012-09-05	투표시간 확대/투표장소 확대
7	이윤석 의원	2012-09-24	투표시간 확대
8	장하나 의원	2012-09-25	투표시간 확대/투표장소 확대
9	정진후 의원	2012-10-22	선거연령 확대
10	이상규 의원	2012-10-29	투표시간 확대
11	이상규 의원	2012-10-30	여성정치참여 확대
12	장하나 의원	2012-10-30	선거연령 확대
13	윤후덕 의원	2013-02-27	선거연령 확대
14	김민기 의원	2013-05-06	투표시간 확대
15	김을동 의원	2013-06-26	여성정치참여 확대
16	유승희 의원	2013-08-09	여성정치참여 확대
17	남인순 의원	2013-09-24	여성정치참여 확대
18	심상정 의원	2013-12-20	비례대표 확대
19	심상정 의원	2013-12-23	거대정당 기득권 낮추기(투표용지 정당기호 추첨제)

20	의원	2013-12-26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확대
21	김현숙 의원	2013-12-30	여성정치참여 확대
22	이상규 의원	2013-12-31	비례대표 확대
23	류지영 의원	2014-01-07	비례대표 확대/여성정치참여 확대
24	심상정 의원	2014-01-13	투표시간 확대
25	최재성 의원	2014-01-21	선거연령 확대
26	유승희 의원	2014-02-05	유권자표현 보장
27	김경협 의원	2014-03-20	투표장소 확충
28	최재성 의원	2014-04-07	거대정당 득권 낮추기(투표용지 정당기호 추첨제)
29	이찬열 의원	2014-07-14	투표장소 확충
30	김세연 의원	2014-10-01	선거연령 확대
31	노웅래 의원	2014-11-04	투표시간 확대
32	진선미 의원	2014-12-01	투표장소 확충
33	나경원 의원	2015-04-17	여성정치참여 확대
34	김태년 의원	2015-08-17	선거출마 경제적 장벽 낮추기

-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10개임.

< 2>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정치개혁 <국회법> 개정안 (2016.3.18. 기준)

번호	발의자	제출일	주제
1	나성린 의원	2012-07-09	국회윤리(징계)심사 강화
2	김상희 의원	2012-07-13	국회윤리(징계)심사 강화
3	홍일표 의원	2012-07-20	국회윤리(징계)심사 강화
4	이학영 의원	2013-05-09	국회 청원제도 개선
5	김광진 의원	2013-05-24	국회 청원제도 개선
6	이군현 의원	2015-05-31	국회윤리(징계)심사 강화
7	김경협 의원	2013-06-05	국회 청원제도 개선
8	박기춘 의원	2013-06-25	거대 정당 득권 낮추기(교섭단체 요건 완화)
9	이상일 의원	2013-09-27	국회 청원제도 개선
10	민현주 의원	2014-12-11	국회윤리(징계)심사 강화

-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은 모두 4개임.

< 3>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정치개혁 <정당법> 개정안 (2016.3.18. 기준)

	발의자	제출일	주제
1	정진후 의원	2012-11-05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	황주홍 의원	2014-11-03	정당설립의 장벽 낮추기
3	원혜영 의원	2015-03-20	정당설립의 장벽 낮추기
4	김태년 의원	2015-07-01	정당설립의 장벽 낮추기

## 2.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직전의 정치개혁 법안 주제별 현황

### 1)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표4> 유권자 참정권 보장하는 정치개혁 법안 (2016.3.18. 기준)

구분	발의자	발의법안 및 발의일	주요 내용	심의현황
선거권 연령 인하	정진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10-22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장하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10-3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윤후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02-2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최재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1-2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김세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10-0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투표시간 확대	주승용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7-03	부재자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4시에서 밤 8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이목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7-26	모든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04	모든 투표 마감 시각을 밤 9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장병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0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윤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24	일반 선거와 보궐선거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장하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25	모든 투표 마감 시각을 밤 9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이상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10-29	모든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05-06	부재자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4시에서 밤 8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심상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1-13	모든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11-04	모든 투표 마감 시각을 밤 8시까지로 연장함	(위와 같음)
투표장소 확대 (부재자투 표소, 사전투표 소)	장병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05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중 '부재자투표자 2천명 이상 대학'을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 5% 넘는 대학으로 확대함	(위와 같음)
	장하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25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중 '부재자투표자 2천명 이상 대학'을 500인 이상 대학으로 확대함	(위와 같음)
	김경협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3-20	사전투표소 설치장소를 읍면동별 1개 장소 외에도 군부대 밀집지역 또는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추가 설치 허용함	(위와 같음)
	이찬열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7-14	사전투표소 설치장소를 읍면동별 1개 장소 외에도 대학교, 공단, 철도역사 등에 추가 설치 허용함	(위와 같음)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11-04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수 를 '읍면동별 1개 장소' 에서 일반 선거의 투표소 개수와 동일하게 함	(위와 같음)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12-01	사전투표소 설치장소를 읍면동별 1개 장소 외에도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 추가 설치 허용함	(위와 같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박영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6-22	진실로 믿을 만한 경우에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면제 / 후보자 비방죄 폐지	(위와 같음)
	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2-05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 / 후보자 비방죄 폐지	(위와 같음)
	김태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5-08-17	선거운동의 정의를 직접적,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엄격히 규정 /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노동조합 등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금지조항 폐지	(위와 같음)
선거출마 경제적 장벽 낮추기	김태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5-08-17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낮춤(대선 3억원→1억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500만원, 광역시,도지사선거 5천만원→1천만원 등으로 인하)	(위와 같음)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박성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09-30	후보자의 범죄전과 정보를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함	(위와 같음)



## 2)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 < 5> 국회 및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하는 법안 (2016.3.18. 기준)

	발의자	발의법안 및 발의일	주요 내용	심의현황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김선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12-26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여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비례대표 의석 확대	심상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12-20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0%로 확대함(현재 10%)	(위와 같음)
	김선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12-26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246석)의 50%인 123석으로 늘림	(위와 같음)
	이상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12-31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0%로 확대함(현재 10%)	(위와 같음)
	류지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1-0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국회의원/ 지방의원 여성비율 확대	이상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2-10-30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5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김을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06-26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08-09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5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남인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09-24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5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김현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12-30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류지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1-07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나경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5-04-17	지역구 후보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 6>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 기득권 낮추는 법안 (2016.3.18. 기준)

	발의자	발의법안 및 발의일	주요 내용	심의현황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박기춘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6-25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국회의원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국회 운영위원회 상정
투표용지 후보 기호 추첨제	심상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12-23	투표용지 정당별 기호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결정함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최재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4-04-07	투표용지 정당별 기호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결정함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현역 의원과 경쟁할 예비후보 규제 완화	김태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5-08-17	예비후보자 등록 허용 시기 앞당김 (국회의원선거일 6개월전→1년전 등)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내용과 홍보 물 수량에 대한 지나친 규제 폐지	(위와 같음)

### 4)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표7>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는 법안 (2016.3.18. 기준)

구분	발의자	발의법안 및 발의일	주요 내용	심의현황
정당설립 요건 완화와 풀뿌리 지역정당 설립 허용	황주홍 의원	정당법 개정안 2014-11-03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 폐지 / 정당은 광역시도당을 5개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1개 이상으로 완화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원혜영 의원	정당법 개정안 2015-03-20	2개 이상의 읍면동에 근거한 자치정당 허용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김태년 의원	정당법 개정안 2015-07-01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시,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정치개혁특위 심의 후 안행위 회부(2015.12.17.)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정진후 의원	정당법 개정안 2012-11-05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함	(위와 같음)

###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표8> 국민의 청원권 보장하는 법안 (2016.3.18. 기준)

구분	발의자	발의법안 및 발의일	주요 내용	심의현황
청원서 심사 의무화	김광진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5-24	청원서는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됨	운영위원회 상정
	김경협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6-05	청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1회 연장 60일)에 심사완료해야 함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 상정
	이상일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9-27	청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1회 연장 90일)에 심사완료해야 함	(위와 같음)
다수 국민지지 청원안 공청회 의무화	이학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5-09	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의 경우, 국회 공청회 개최와 국회방송중계 의무화	운영위원회 상정
청원서 제출 문턱 낮추기	이학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5-09	청원접수를 위해서는 의원 1인이 소개해야만 하는 규정 폐지 / 방문 접수만 가능한 현행 방식 외에 온라인을 통한 청원서 제출 허용	(위와 같음)

## 6)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 < 9>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 개선하는 법안

	발의자	발의법안 및 발의일	주요 내용	심의현황
징계안 심사 의무화	나성린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2-07-09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징계요구안을 60일 이내(추가 60일) 심사완료할 것을 의무화함	운영위원회 상정
	김상희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2-07-13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징계요구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후 90일 이내 심사완료 할 것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홍일표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2-07-20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징계요구안을 90일 이내 심사완료할 것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이군현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3-05-3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현주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4-12-11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징계요구안을 60일 이내 심사완료할 것을 의무화함	(위와 같음)
의원 징계 회의 공개	나성린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2-07-09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폐지함	(위와 같음)
	김상희 의원	국회법 개정안 2012-07-1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3.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주요 과제들

-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 등의 방식으로 전달한 바 있음.
  - 2013년 12월 1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6개 정치관계법 개정안 청원서 국회 제출
  - 2015년 8월 25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및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 과제 발표
- 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정치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지역구 의석 대비 50%, 또는 100석 이상)
  - 지역구 후보의 30%,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
  - 유권자의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폐지
  -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대 등 투표권 보장
  -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
  - 정당별 의석규모에 따른 기호부여 방식 폐지와 추첨제 도입
  - 공직후보 출마자 기탁금 액수 인하와 반환기준 완화
  - 풀뿌리 지역정당 출현을 위한 정당설립요건 완화
  -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당원 가입 금지 규정 개정
  - 정치자금 정보공개 범위 확대
  -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국회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국회 청원서 제출 요건 완화(소개의원 의무규정 삭제) 및 온라인 접수 허용, 일정기간내 청원심사 완료 의무화
  - 일정기간 내 국회의원 징계안(윤리심사) 처리 완료 의무화,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마련
  -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발행일 2016. 3. 21.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교수)

담 당 이선미 팀장 02-725-7104 aim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